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 BNK26-06특수채(AAA이상)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채권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-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5년 07월 01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	-	- 2025.07.01: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p>(1) 이익금의 지급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p> <p>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&lt;단서조항 신설&gt;</p> <p>4. &lt;신설&gt;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p>(1) 이익금의 지급</p> <p>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분배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.</p> <p>1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 <p>2.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/p> <p>3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[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)은 제외한다]</p> <p>4.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</p>

		<p>(2)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        ※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&lt;신설&gt;</p>	<p><u>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</u>          (2)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동일)          ※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     이 투자신탁의 보유현금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유현금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상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<u>다만,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유보할 수 없는 이자수입 및 배당수익은 분배하여야 합니다.</u></p>
--	--	--	--

<끝>.